

2023년 「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」 창업지원기관 모집

청년 등 다양한 창업 수요자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2023년 「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」 창업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.2.2.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1 공모 개요

□ 목적

- 협동조합 창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창업지원을 통해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 지원

□ 사업 규모: 십이억오천만원(₩1,250,000,000)(VAT 포함*)

- 창업지원기관 운영비, 창업팀 사업비로 구성
 - * 면세사업자는 부가세(창업지원기관 사업비의 10%)를 제외하고 협약 체결

□ 창업지원기관의 역할

-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하여 준비된 협동조합 신규 설립 지원
 - 협동조합 가치 및 운영 원리 이해, 기업가로서의 경영 역량 강화, 초기 사업모델 설계를 위한 교육·멘토링·컨설팅·시범사업 지원 등
 - 창업팀 선정, 평가, 지원 중단 등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3인 이상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 - 창업팀 사업비 지급 및 관리, 정산 지원 등 행정업무 수행

□ '23년 추진방향

- 창업지원기관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이 높은 창업지원기관 선발
 - * 지원기관과 창업팀의 분야 적합성을 높여 협동조합 창업육성 제고

□ 선정 대상 및 규모

- (대상) 다양한 업종·지역·수요계층별 협동조합 창업육성의 전문성을 보유한 역량있는 기관 선정

기관 유형	주요내용
①업종특화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업종별 전문성을 보유하여 관련 업종 협동조합의 창업육성 역량을 갖춘 창업지원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 업종분류에서 최대 2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가능 - 아래 업종분류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를 제안하여 지원가능 ※ 업종분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교육, ㉡돌봄, ㉢보건의료, ㉣문화예술, ㉤농업, ㉥도시재생(지역활성화), ㉦스포츠, ㉧에너지, ㉨탄소중립자원재순환, ㉩제조(메이커), ㉪IT·디지털, ㉫기술, ㉬사회서비스(상세:____) ㉭기타
②지역특화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,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창업지원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 지역분류에서 최대 3개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가능 ※ 지역분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서울, ㉡경기, ㉢부산, ㉣대구, ㉤인천, ㉥광주, ㉦대전·세종, ㉧울산, ㉨강원, ㉩충북, ㉪충남, ㉫전북, ㉬전남, ㉭경북, ㉮경남, ㉯제주
③문제해결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또는 서비스의 수혜대상의 현안(사회문제 등)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해결형 협동조합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창업지원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 수혜대상 분류에서 최대 2개 수요계층을 선택하여 지원가능 ※ 수혜대상 분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청년, ㉡중장년, ㉢고령자, ㉣장애인, ㉤경력단절여성, ㉥장기실직자, ㉦청소년 및 영유아·아동, ㉧기타

* 기관유형별 교차지원은 불가

- 정부의 산업·고용·복지 등 정책 방향 및 부처별 협동조합* 정책에 이해도 높은 기관
 - * (예) 디지털과학기술, 탄소중립에너지, 돌봄, 직원협동조합, 프리랜서, 지역공동체 등
- 기 설립한 협동조합 성공모델의 복제 및 안정화 지원 역량 보유한 기관
- (규모) 창업팀 총 100개팀 모집
 - 창업지원기관 10개 내외 선정, 기관 당 창업팀 10개 내외 배정(예정)
 - 기관당 최소 5개 ~ 최대 12개 창업팀 배정(예정)
 - * 기관 선정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관별 창업팀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
 - ** (참고) '21년 창업지원기관 총 15개소, '22년 창업지원기관 총 14개소 운영

□ (예산) 창업팀 당 12.5백만원(기관 운영비 6백만원, 창업팀 사업비 6.5백만원)

- 창업지원기관 운영비: 담당 창업팀당 6백만원 지급(VAT 포함)
 - * (예) 창업팀 10개소 육성 시 6백만원×10개소 = 60백만원 지급
- 창업팀 사업비: 팀당 기본사업비 5백만원, 추가사업비 평균 1.5백만원 지급
 - * 각 기관별 담당 창업팀 수에 비례하여 우선 진흥원이 창업지원기관에 지급하며, 창업팀 선정 후 창업지원기관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검토하여 창업팀에 지급
 -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(평균 1.5백만원)를 창업팀에 차등지급
 - * 3등급(우수, 보통, 미흡)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

□ 우대사항

- '청년창업팀'* 참여 활성화를 위해, 50% 이상 선발하는 기관 우대 및 '청년 특화 창업지원기관'***으로 지정
 - * 청년창업팀 기준: 신청 당시 청년(만 39세 이하)이 대표인 창업팀, 주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팀
 - ** 청년 특화 창업지원기관 지정은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름
- '보건·복지 분야*' 관련 전문성 보유한 기관 우대 가능
 - * 돌봄, 보건의료 등 보건·복지 분야에서 사회안전망 보강에 기여한 협동조합 모델
 - 비대면 창업지원 인프라 등 다양한 물적·인적자원 보유 기관 우대 가능

□ (사업 기간) 협약체결일 ~ '23.11.30.

- * 사업 종료일 전, 진흥원이 지정하는 일자 내에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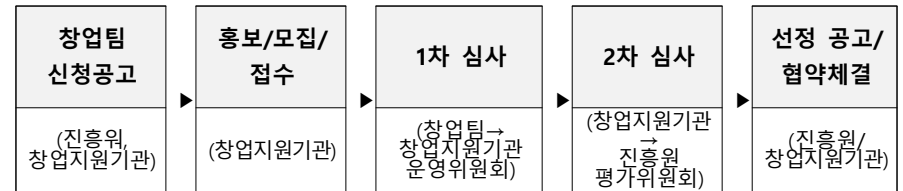
2 과업 세부 내용

1. 창업팀 모집 및 육성

□ 창업팀 모집

- 지역별·업종별 자체 Pool과 채널을 활용하여 창업팀 상시 발굴, 사업 홍보, 모집 및 접수, 선정심사 진행
 -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 접수한 창업팀 대상 1차 평가 실시 이후, 진흥원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여부 최종 확정
- 창업팀 모집공고 후 2주일 내 기관별 사업설명회 개최

<참고: 창업팀 선정 절차>



□ 창업팀 육성

- 선정된 창업팀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- 창업팀 대상 기관별 전문성 기반의 서비스 표준안 제시
 - * 교육 n회, 멘토링 n회, 보고서 제공 n식 등 구체적으로 작성
- 창업팀 사업비 지급 및 적법한 집행 관리, 정산 지원
- 창업팀 사업성과 관리 및 당해연도 내 협동조합 설립 지원
 -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협동조합 설립준비 지원
- 기타 창업지원기관별 가용한 민간·공공 자원 연계 지원

2. 창업팀 평가

□ 창업팀 점검 및 평가

- 창업팀 참여실적 및 성과 수시점검
- 창업팀 중간평가(7월) 및 최종평가(10월) 사전검토자료 제출 등 협조
 - * (평가절차)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에서 1차 평가 → 진흥원 평가위원회에서 창업지원기관의 창업팀 육성 현황,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평가 결과 확정

3. 기타 협조사항

□ 창업팀 이력조사 협조

- 진흥원이 최근 5년간 사업을 이수한 창업팀 대상 경영 이력조사 진행 시 조사 안내 및 독려 요청 등 응답률 제고를 위해 협조

□ 공동행사 및 역량강화 교육 참석

- 진흥원이 개최하는 전체 창업팀 또는 창업지원기관 대상 교육, 네트워킹, 성과공유회 등 프로그램 적극 참석

□ 창업팀 대상 운영지침, 사업비 정산, 각종 서류제출 일정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안내

□ 창업팀·지원기관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제출, 인터뷰, 간담회 등 협조

* 평가 지표 및 절차 등 세부 내용은 기관 선정 후 안내 예정

[[참고1] '23년 창업지원사업 주요 일정]

단계	주체	일정(예정)
창업지원기관 모집공고	진흥원	'23. 1.
↓		
신청서 접수	신청기관→진흥원	'23. 2.
↓		
선정심사(서면, 대면)	진흥원(평가위원회)	'23. 2.
↓		
기관 선정 및 창업팀 모집 * 계약 후 2주내 창업팀 모집 예정	진흥원, 창업지원기관	'23. 2~3.
↓		
창업팀 선정 및 선금 지급	진흥원, 창업지원기관	'23. 4.
↓		
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	창업지원기관	'23. 4~10.
↓		
창업팀 및 창업지원기관 중간평가	운영위원회, 평가위원회	'23. 7.
↓		
창업팀 및 창업지원기관 최종평가	운영위원회, 평가위원회	'23. 10~11.
↓		
정산 및 잔금 지급	진흥원→창업지원기관	'23. 11.

*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3 신청 자격 및 요건

□ 신청 자격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
- 정부부처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
- *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

□ 공동수급(공동계약): 불허

- 불허 사유: 사업 특성에 따른 과업추진의 일관성, 시급성 등의 사유 및 책임 있는 과업수행체계구축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,
- 사업의 전문적 운영관리, 공정의 품질담보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
- *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이 불가한 것으로,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

□ 신청 요건

- 참가신청서에 **창업지원기관 유형 및 세부분야 제시**
- 부처별 협동조합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현장의 창업 수요가 풍부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은 우대할 수 있음
- **육성 가능한 창업팀 수 제시**
- 내실있는 창업지원 및 다양한 분야의 창업지원을 위해 기관별 육성 가능한 범위(10팀 내외) 내에서, 각 기관별 목표 육성팀 수 기재

- **참여인력:** 총괄책임자(1명), 실무책임자(1명 이상) 반드시 편성
- (총괄책임자) 창업지원기관 사업 총괄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
- (실무책임자) 상시상담, 협동조합 창업 멘토링, 전문 컨설팅 및 내·외부 자원 연계를 담당하는 창업팀 전담 지원인력
- * 인력변경이 불가피할 경우, 진흥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
- ** 지원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할 경우, 해당 인력의 사업별 참여비율 총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**운영위원회:** 창업팀 선정, 중간평가, 지원중단 등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학계·창업지원·협동조합 전문가 등 3~10인 이내에서 구성하여 기재
- * 심사선정 이의신청 심의, 안건별 개최정족수 등 세부운영 방안 기재

□ 우대 사항

- **(창업팀 pool 확보)** 사업 신청 당시 모집 가능한 창업팀 후보군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한 기관은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*
- * 신청서에 기재한 육성 가능 창업팀 수 이상으로 pool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
- * '청년 특화 창업지원기관'으로 신청 시 반드시 청년창업팀 후보군을 제출해야 함
- **'청년창업팀'*** 참여 활성화를 위해, 50% 이상 선발하는 기관 우대 및 **'청년 특화 창업지원기관'****으로 지정
- * 청년창업팀 기준: 신청 당시 청년(만 39세 이하)이 대표인 창업팀, 주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팀
- ** 청년 특화 창업지원기관 지정은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름
- **'보건·복지 분야'*** 관련 전문성 보유한 기관 우대 가능
- * 돌봄, 보건의료 등 보건·복지 분야에서 사회안전망 보강에 기여한 협동조합 모델
- 비대면 창업지원 인프라 등 다양한 물적·인적자원 보유 기관 우대 가능

4 선정 및 계약

□ 선정심사

- (기본방향) 평가위원회를 개최, 기관별 창업지원 인프라,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, 멘토링, 교육, 자원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(심사절차) 서면심사 → 대면심사 등 2단계 심사 실시

< 창업지원기관 선정심사 절차 >

심사 단계	내용
서면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기관이 제출한 제안서(사업계획서) 등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 평가 * 서면평가 통과한 기관에 한해 대면평가 기회 부여
↓	
대면심사 * 예정일: 2.23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체적인 창업지원계획 PT 발표 실시(10분 발표 분량) * 공모 마감일까지 대면심사 PT자료 미제출시, 서식1~5로 대체 ** 코로나-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PT영상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대체 가능 ○ 창업지원기관 선정 및 기관별 창업팀 수 배정

- 각 심사 단계별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기관에 한해 심사 통과
- * 단, 서면심사 대상 기관이 10개소 이하인 경우 서면심사를 생략하고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심사 진행 가능

□ 기관선정 및 계약체결

- 대면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진행하고, 협상 결렬 시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진행
- 협상 완료 및 계약 체결
 - 추후 창업팀 모집 결과에 따라 진흥원이 기관별 창업팀 수를 최종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계약(금액) 변경 가능

[[참고2] '23년 창업지원기관 심사 평가 지표]

사업명	20 년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			
신청기관		총괄책임자		
구분	평가 요소	배점	점수	
협동조합 이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 ○ 협동조합 가치 및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 	10	10 8 6 4 2	
사업목표 및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업팀 발굴·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·방향의 적정성 ○ 사업의 주요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○ 희망 육성 창업팀 수와 사업전담조직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	10	10 8 6 4 2	
사업추진역량 및 인프라	인력 전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한 창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○ 유사 창업지원사업 경험 및 전문성 ○ 지원인력 규모 및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의 적정성 	25	25 20 15 10 5
	창업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한 창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(교육, 멘토링 등) 적정성 ○ 협동조합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적정성 	15	15 12 9 6 3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 창업팀 또는 사회서비스(보건·복지) 분야 창업팀 발굴·모집 및 창업 프로그램의 적정성 	3	3 2 1 0
	사업 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업팀 평가,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	15	15 12 9 6 3
	자원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 전문가 및 자원 활용의 적절성 - 지역사회 내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선배 협동조합 등 연계 가능한 인적·물적 자원 보유 및 동원 역량 등 	12	12 9 6 3 0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목표 설정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○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한 모델 복제·확산 등 사업을 통한 파급력 및 효과성 등 	10	10 8 6 4 2	
총 계		100	[]	

* 세부 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 의결에 의해 변동 가능

5 신청 방법

□ (기간) '23.2.16.(목) 16시까지

* 마감시간 이후 도달한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않음

□ (접수) 이메일 접수(slib@ikosea.or.kr)

□ (문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(031-697-7735, 7739)

□ (제출 서류)

1. 사업 신청 공문(대표 신청기관 명의)
2. 참가신청서 [서식1]
3. 사업계획서, 요약본, 산출내역서, 기관 소개자료 각 1부 [서식2~5]
4. 대면심사 발표 PT 자료[자율서식]
 - * 공모 마감일까지 미제출시, 서식1~5로 대체
5.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
6. 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
7. 입찰보증금지급각서 [서식6]
8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
9. 법인(단체)인감증명서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)
10. 청렴이행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서약서,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, 조세포탈 등 서약서 각 1부 [서식7~11]

- [서식1,2,6] 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서식을 사용
- 모든 서류를 각각 구분하여 스캔하고, 순서대로 저장 후 PDF 파일로 제출
 - PDF로 변환시 2면 인쇄(A4 가로로 1장에 2면 출력) 형태로 저장되지 않도록 유의
- [서식2,4,5] 사업계획서, 요약서, 소개자료는 한글파일(.hwp)로도 제출
 - 이미지 첨부시 파일 용량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사진 해상도 및 사이즈 조절 등 조치

(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□ (유의사항) 창업지원기관 유형- 세부분야 선택 관련

○ 세부분야별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, 심사에서 감점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

기관 유형	세부분야 상세 및 선택 방법
①업종특화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업종별 전문성을 보유하여 관련 업종 협동조합의 창업육성 역량을 갖춘 창업지원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 업종분류에서 최대 2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가능 - 아래 업종분류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를 제안하여 지원가능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※ 업종분류 ㉠교육, ㉡돌봄, ㉢보건의료, ㉣문화예술, ㉤농업, ㉥도시재생(지역활성화), ㉦스포츠, ㉧에너지, ㉨탄소중립·자원재순환, ㉩제조(메이커), ㉪IT·디지털, ㉫기술, ㉬사회서비스(상세:____) ㉭기타 </div>
②지역특화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,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창업지원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 지역분류에서 최대 3개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가능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※ 지역분류 ㉠서울, ㉡경기, ㉢부산, ㉣대구, ㉤인천, ㉥광주, ㉦대전·세종, ㉧울산, ㉨강원, ㉩충북, ㉪충남, ㉫전북, ㉬전남, ㉭경북, ㉮경남, ㉯제주 </div>
③문제해결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또는 서비스의 수혜대상의 현안(사회문제 등)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해결형 협동조합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창업지원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 수혜대상 분류에서 최대 2개 수요계층을 선택하여 지원가능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※ 수혜대상 분류 ㉠청년, ㉡중장년, ㉢고령자, ㉣장애인, ㉤경력단절여성, ㉥장기실직자, ㉦청소년 및 영유아·아동, ㉧기타 </div>

* 기관유형별 교차지원은 불가

□ 기타 행정 사항

- 본 공모사업 신청 관련 일체의 비용은 공모참가자 부담으로 함
- 제출서류 미비 시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제출 요청 등의 과정 없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
- 신청서·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 - 선정·협약체결 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협약취소·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
-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
- 제출된 계획서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
- 사업 수행에서 생산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권한은 진흥원과 공동 소유, 향후 활용 시 진흥원과 협의 및 진흥원 연계 명시 필요
-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수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지원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
 - *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보고시기 등은 조정 가능
- 「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」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,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보유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이 불가함
 - * 단, 고유식별정보 중 생년월일만을 명시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함

- 기타 본 공고문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용역계약일반조건」, 조달청지침 「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」, 진흥원 내규 「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르며,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응모기관에 책임 귀속

□ 사업비 관리 및 정산

- 창업지원기관은 기관운영비, 창업팀 사업비를 각각 구분하여 관리
 - 창업지원기관·창업팀은 반드시 타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용 계좌 이용
-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후 사업비 회계 감사를 통해 정산
 - 상세 사업비 협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진행하며, 세부 사업비 운영 기준은 협상 이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별도 안내 예정
- 계약 체결 후 창업지원기관의 신청에 따라 최대 70% 한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
 - 정부 정책 및 진흥원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지급 한도 및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
- 잔금 지급을 위해 회계법인 등 정산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정산 후 최종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
 - 잔금은 사업비 전액 집행 후 회계 감사를 통해 실제 집행금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(11월 중)
 - 창업지원기관은 계약종료일 전 진흥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회계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

[(참고3) 사업비 구성·활용 내역]

☞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

사업비 구성·활용 내역		
구분	비목	활용 항목
창업지원기관 운영비	인건비	- 사업 참여인력(총괄책임자, 실무담당자, 창업멘토 등) 인건비 -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 인건비
	위촉수당	- 교육, 멘토링, 네트워킹, 자문 등 위한 외부 강사, 멘토, 연구진, 자문위원 등 위촉 시 지급하는 수당
	일반수용비	- 기타 행정사무비, 구매·용역대금, 사업 홍보를 위한 경비 등 부대비용
	임차료	- 교육, 워크숍, 행사 등 장소 임차(숙박비 제외) - 전세버스 임차
	여비	- 사업 참여인력의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, 숙박비 등 경비(실비), 일비(1일 2만원 이내(정액))
	사업추진비	- 창업지원기관 외부인원 또는 창업팀과의 회의 식사, 다과 - 창업지원기관이 주관하며 외부인원 또는 창업팀이 참여하는 교육, 멘토링, 네트워킹 등 행사 식사 및 다과 * 창업지원기관 운영비 총액의 20% 이내
	간접비	- 기관 시설물 활용 간접비용 * 창업지원기관 운영비(세전) 총액의 10% 이내
	부가세	- 창업지원기관 운영비의 11분의 1
창업팀사업비	일반수용비	- 사무용품, 도서 등 구입, 인쇄·복사·스캔, 보험료 -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·서비스 구입 - 우편료, 특허출원비, 인증획득비,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, 논문 이용료 등 각종 행정비용 - 협동조합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-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, 전시회 참가비
	위촉수당	- 강사, 멘토, 연구진, 자문위원 등 전문가(개인) 위촉 시 지급하는 수당
	임차료	- 신규 사무공간 및 장비 등 임차, 리스 - 교육, 워크숍, 행사 등 장소 임차(숙박비 제외) - 전세버스 임차
	여비	- 창업팀원의 국내 타 권역 및 국외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, 숙박비 등 경비(실비)
	창업활동비	- 창업팀이 주최·주관하며, 창업팀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식대 및 다과 * 사업비 총액의 20% 이하로 편성
	외주용역비	- 컨설팅계약 대금 - 법무, SW 등 전문분야 위탁용역 대금
	기자재구입비	-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산성 기자재 구입 경비 * 사업비 총액의 40% 이하로 편성